

類似保險의 業務領域 擴大에 따른 生保業界 對應方案

文 定 瑢

(興國生命(株) · 計理部長)

◀ 목 차 ▶

- I. 머리말
- II. 類似保險制度的 運營 實態
 - 1. 類似保險의 現況
 - 2. 遞信保險
 - 3. 農業協同組合 共濟
 - 4. 水產業協同組合 共濟
 - 5. 信用協同組合 共濟
 - 6. 새마을금고 共濟
- III. 類似保險의 領域 擴大
 - 1. 類似保險의 實績 現況
 - 2. 加入對象 擴大
 - 3. 加入限度額 高額化
 - 4. 民營保險商品 模倣
 - 5. 專門募集人制度 導入
- IV. 對應方案
 - 1. 法的 · 制度的 對應
 - 2. 商品競爭力 提高
 - 3. 契約者 서비스強化

I. 머리말

金融의 國際化 · 開放化 물결속에서 미국의 대외 통상압력으로 생명보험시장을 대내외적으로 개방하여 1987년까지 6개사에 불과하던 생명보험 회사수가 1993년 현재 32개사에 달하여 모집인, 점포 관리자 및 보험전문요원의 스카웃 열풍, 치열한 생보시장 쟁탈전,金利自由化의 추진으로 인한 계속적인 여·수신 금리차 축소등 생명보험 경영 여건은 악화일로에 있다.

또한 遞信保險 · 農協共濟 · 水協共濟 · 信協共濟의 가입한도 인상, 모집전담 조직의 구축 · 확충, 생보의 주력상품인 금리연동형 저축상품개발등 그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의 생명 공제업무개시, 은행의 종업원 퇴직적립보험 시장의 신규참여등 인접업계의 생명보험 영역침해 사례가 빈발하여 생보업계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類似保險制度的 現況, 運營

實態등 그 실체와, 논란의 쟁점이 된 최근의 업무 영역 확대 사례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II. 類似保險制度의 運營 實態

1. 類似保險의 現況

(1) 類似保險의 特徵

共濟事業이 발생하게 되는 요인은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 과정에서 농민·근로자·중소기업인등 經濟的 弱者가 생기게 마련이며, 民營保險社에서는 농촌지역 벽지등에의 점포 설치에 따른 과다한 경비 지출로 採算性이 맞지 않는등 여러가지 이유로 하여 경제력이 약한계층에 대한 民營保險社의 보험인수가 적극적이지 못하였다. 이러한 보험의 소외계층에서 각기 그들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지역별, 직업별로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신용·구매·판매등의 경제거래를 비롯하여 조합원의 상호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共濟事業을 실시하게 되었다.

공제 사업의 특징은 ① 사업의 대상이 특정 地域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 ② 그 구성원이 소수인

점 ③ 공제금액이 위로금 정도의 소액인 점 ④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 아닌 相互扶助의 목적인 점 등이 있으나, 오늘날의 共濟事業은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사업대상이 불특정 다수의 전국민으로 확대되고, 공제금액의 고액화, 상호 부조 성격의 퇴색 등 民營保險事業과 대등한 위치에 와 있다.

미국·영국·독일등 구미 선진국에서는 協同組合保險 성격인 공제사업도 民營保險과 같이 사업 면허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으며 保險業法의 規制와 保險 監督廳의 감독을 받는 등 法體系가 一元化 되어 있다.

일본은 1946년 보험업법에 협동조합보험에 관한 章을 신설하여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실현을 보지 못하고, 1947년에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조합원의 복리후생 시설로서 『공제』라는 이름으로 보험업 운영이 실현됨과 동시에 다른 협동조합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치가 취해졌다.

우리나라에서의 遞信保險과 共濟事業은 일본의 영향을 받아 각종 특별법에 의해 공제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보험업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法體系가 二元化되어 있다.

〈표-1〉

類似保險 特徵 및 現況

구 분	특 징	현 황
채신보험	- 國營保險 - 가입한도의 소액 - 가입의 간편성(무진단) - 비영리성	- “民營保險의 보완”이라는 근본취지 이탈 ○ 가입한도 인상으로 가입대상층 民保수준 ○ 민보 주력상품 모방한 상품개발로 사업 확대 추진
공 제	- 조합원 상호구제의 조합보험 - 가입대상 폐쇄성(지역·지역) - 보험금부의 소액화(위로금 성격)	- 가입대상 불특정 다수 - 급부수준의 고액화(民保상품 모방 및 유사 제도 운영등 실질적인 보험사업 시행)

(2) 類似保險 事業現況

우리나라의 조합보험(공제)사업은 <표-2>에서 보는 바와같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16개단체와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10개 단체가 있으며, 생명공제를 취급하고 있는 단체는 7개 단체가 있다.

교원공제와 군인공제 및 민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의 공제는 그 가입대상을 교원과 군인 및 조합원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本稿에서는 遞信保險, 農協, 水協, 信協, 새마을금고등 5개 단체의 生命共濟(보험)에 국한시켜 다루고자 한다.

<표-2>

共濟事業 運營現況

구 분	단 체 명	근 거 법 령	설 립 년 도	취 급 공 제		감독기관
				생명공제	손해공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	농 업 협 동 조 합	농 업 협 동 조 합 법	61. 8	○	○	농수산부장관
	수 산 업 협 동 조 합	수 산 업 협 동 조 합 법	62. 4	○	○	수 산 청 장
	축 산 업 협 동 조 합	축 산 업 협 동 조 합 법	81. 1	○	○	농수산부장관
	신 용 협 동 조 합	신 용 협 동 조 합 법	72. 8	×	○	재 무 부 장 관
	건 설 공 제 조 합	건 설 공 제 조 합 법	63. 11	×	○	건 설 부 장 관
	전 문 건 설 공 제 조 합	전 문 건 설 공 제 조 합 법	88. 4	×	○	건 설 부 장 관
	전 기 공 사 공 제 조 합	전 기 공 사 공 제 조 합 법	83. 10	×	○	동 자 부 장 관
	전 기 통 신 공 제 조 합	전 기 통 신 공 사 업 법	87. 11	×	○	체 신 부 장 관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공 업 발 전 법	68. 2	×	○	상 공 부 장 관
	한 국 해 운 조 합	한 국 해 운 조 합 법	62. 7	×	○	해운항만청장
	버스·택시·화물공제조합	육 운 진 흥 법	57. 7	×	○	교 통 부 장 관
	대 한 교 원 공 제 조 합	대 한 교 원 공 제 회 법	71. 7	○	×	문 교 부 장 관
	새 마을 금 고 연 합 회	새 마 을 금 고 법	91. 1	○	○	내 무 부 장 관
	군 인 공 제 회	군 인 공 제 회 법	84. 2	○	×	국 방 부 장 관
	부 동 산 중 개 업 협 회	부 동 산 중 개 업 법	91. 6	×	○	건 설 부 장 관
	체 신 보 험	체 신 예 금 · 보 험 법	82. 12	○	×	체 신 부 장 관
민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	○ 한국지방행정공제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체신공제조합 ○ 담배·인삼공제회 ○ 철도청공제조합 ○ 대한의학회공제회 ○ 관우회 ○ 세우회 ○ 대한소방공제회 ○ 학교재해복구공제회					

자료 : 한국보험시장의 구조, 보험감독원, p. 174.

(3) 類似保險과 民營保險의 競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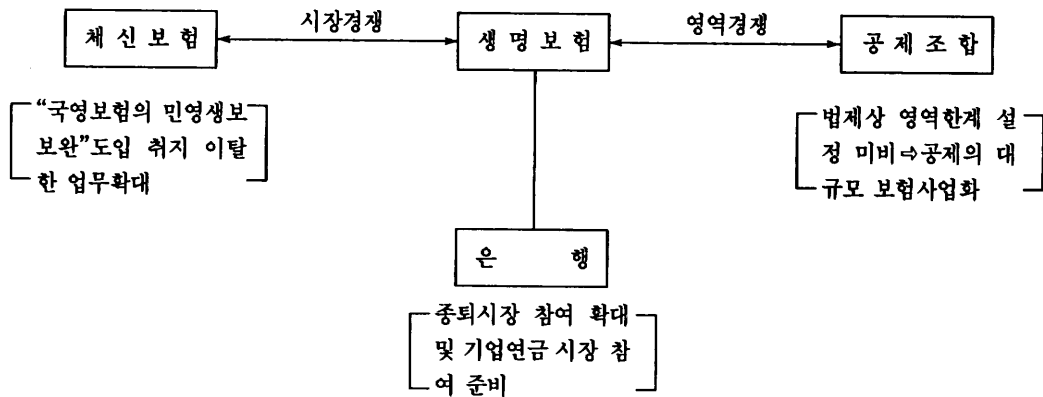
逓信部, 農·水産業 協同組合, 信用協同組合등 인접업계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民營生命保險會社의 상품을 그대로 모방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예·적금의 금융 상품과 손해공제까지 취급하고 있어 은행·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를 통합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재무부당국의 金融機關間 業務領域區分 政策의 사각지대화 되어 있다.

그리고, 簡易保險 및 組合保險의 특징인 가입금액 및 가입대상의 제한등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국내 보험시장의 잠식은 民營生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87년 보험시장 개방으로 아직 경영기반이 취약한 新設生保社의 경우 유사보험의 영역확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림-1〉

유사보험 경합도



2. 逓信保險

(1) 체신보험의 연혁

우리나라 체신보험은 1929년 5월 조선 簡易生命保險令이 제정되어, 1929년 10월 조선총독부 체신국에서 종신보험, 양로보험의 2가지 상품으로 개시 되었다.

최초의 간이생명보험은 일본제도를 모방하여 보험금액이 소액이고, 무진단 보험으로 우편국 조직을 통하여 중·소 도시 근로자, 도서벽지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판매되었다.

해방후 일제시대의 법령은 폐지되고 1952년 國

民生命保險 및 郵便年金法이 제정되어 간이생명보험이 국민생명보험으로 개칭되어 판매 되었다.

1970년대부터 보험료인하, 가입연령제한, 보험가입한도액 인상등 제도개선이 있었으나 民營保險의 고도성장과 농·수협과의 경쟁속에 업적부진, 경영적자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1976년 12월 농협에 국민생명보험 사업을 이관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체신부의 전화통신사업이 통신공사로 분리되어 자체 수익사업이 없어짐에 따라 1982년 逓信 預金·保險에 관한 法律을 제정하여 1983년 7월 1일부터 체신보험사업을 재개하게 되었다.

체신보험은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

협에 공동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 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국가의 공신력과 저렴한 보험료로 업적이 급신장하여 사업개시 4년여만에 收入保險料 실적이 공제사업중 규모가 가장 큰 농협생명공제를 능가하는 급신장을 보이고 있다.

1988년에는 通信開發研究院을 개설하여 보험 및 금융업무에 대한 기획·조사연구활동과 상품개발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으며, 보험모집 조직의 확대를 위해 遞信保險 管理公團 설립을 1986년 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좌절되었지만 가까운 장래에 설립될 전망이다.

〈표-3〉 체신보험의 연혁

- 1929. 5. : 조선 간이생명보험령 제정
- 1929. 10. : 조선 간이생명보험 업무개시(종신보험, 양로보험)
- 1943. 10. : 우편 연금사업 실시
- 1952. 12. : 국민생명보험법 및 우편연금법 제정
(교육보험등 4개상품)
- 1976. 12. : 국민생명보험법 폐지
- 1977. 1. : 국민생명보험 사업 농협으로 이관
- 1982. 12. :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및 체신보험 특별회계법 제정
- 1983. 7. : 체신보험 사업개시(정기보험등 5개상품)
- 1984. 4. : 보험모집인 제도 실시
- 1988. : 통신개발연구원 개설
- 1988. 8. : 가입 한도액 인상(1,000만원→2,000만원)
- 1991. 2. : 연금보험 개정판매(민보의 노후생활연금과 유사)
- 1993. 1. : 가입한도액 인상(2,000만원→3,000만원)

(2) 遞信保險法의 主要内容 및 財務部 協議事項

遞信預金·保險에 관한 法律(약칭 “체신보험법”) 및 同法 施行規則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遞信保險法〉

- ① 체신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등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진다(법 제4조).
- ② 보험의 종류와 계약 보험가입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과 협의한다(법 제10조).
- ③ 청약의 승낙, 계약의 변경, 해지, 무효, 효력 상실, 부활등 계약의 일반적인 사항(법 제25조~제46조).
- ④ 보험업무를 취급한 자에 대해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48조).

〈遞信保險法 施行規則〉

- ① 연금보험외 9종의 보험종류 및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및 가입연령 범위(규칙 제64조~제67조)
- ② 「민영보험 가입사실」 및 「민영보험 청약 거절된 사실」의 고지 의무 추가 및 위반시 계약 해지(규칙 제74조)
- ③ 양로보험 및 복지보험은 1년 이내 소급계약 인정(규칙 제76조)
- ④ 체신관서의 전직원, 체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보험의 모집 및 보험료의 수금을 할 수 있다. (규칙 제92조)
- ⑤ 모집자 보상금 지급율(규칙 제94조)

- 〈표-4〉참조

체신보험은 國營保險으로서 국가 시설과 인적자원을 이용하여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저소득층을

〈표-4〉

모집자 보상금 지급율

보 상 금 종 류	지 급 율	보 상 금 종 류	지 급 율
모 집 자 보 상 금	계약 보험금액의 3% 이내 또는 모집한 월보험료의 500% 이내	유지관리 보상금	수금한 보험료의 1% 이내
		납입취급 보상금	수금한 보험료의 1% 이내
모집취급 보 상 금	모집 월보험료의 10% 이내	기본 보상금	30만원 범위내 실적에 따라 지급
수 금 자 보 상 금	수금한 보험료의 2% 이내	유공자 보상금	실적에 따라 지급

대상으로 한 소액계약 판매가 그 근본 취지이며, 民間主導型 經濟體制下에서는 민간분야에 대한 정부기관의 참여는 최대한 억제한다는 정책기조나 체신보험의 본래취지에 따라 민영보험과의 균형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험종류 및 가입금액에 대해서는 保險監督主務部處인 재무부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있다.

체신보험법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保險理論에 맞지 않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첫째, 고지의무 위반 계약해지권 행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등에 국한시켜야 하나, 민영보험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民營保險 加入事實」 不告知時 契約解止權 行使는 보험이론에 위배된다.

둘째, 우리나라 상법 643조에서 소급보험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해상보험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조항이며, 생명보험에서는 상

법 644조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의 취지에 따라 소급계약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데에도 遞信保險法에서는 1년이내의 소급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3) 遞信保險의 販賣組織 및 販賣商品

① 판매조직

체신보험의 판매조직을 보면 체신부 산하에 8개 체신청(업무국 체신금융과)과 산하 200여 감독우체국(업무과 보험계)과 3,000여개의 우체국, 우편취급소로 조직되어 있다. 판매요원으로는 각 체신관서의 집배원과 1984년 4월부터 도입된 전문 보험모집인을 통하여 체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우체국망 확장에 한계가 있어 대리점제도와 유사한 우편취급소를 민간인에게 허가하여 판매망 확대를 꾀하고 있다.

〈표-5〉

遞信保險 販賣組織 現況

기 관	기 관 수	모 집 종 사 자 수	신계약업적(%)		1인당 평균실적
우 체 국	2,420	우편물 집배원 : 10,844명 전속 보험모집인 : 356명	7,484억 233억	97.0 3.0	950만원 1,300만원
우편취급소	780	취급소장 : 780명	12억	0.2	—
계	3,200	11,980명	7,729억		—

② 판매상품

1992년 현재 체신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상품은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生存商品 3종, 保障性商品 3종, 短期貯蓄商品 2종, 養老性商品 1종, 團體商品 1종, 총 10개 상품이며 판매성향을 보면 탈퇴형 단기저축상품인 복지보험, 가계안정보험이 1991년 전체 신계약·수입보험료의 각각 88.8%, 96.7%를 점하고 있어 단기저축성판매 편중현상이 민영보험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에 있다. 민영보험에서 주종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노후복지연금보험과 전체적인 상품체계, 준비금적립이율, 사업비율등 여러가지면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의 상품인 체신연금보험의 판매실적이 1991년 신계약액 1.0%, 수입보험료 0.5%에 불과한 실적이다.

체신보험의 판매성향은 短期貯蓄性 商品 및 退職擔保의 團體保險에 편중되어 있어, 민영보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농촌지방·도서벽지의 농·어민, 도시의 저소득층에 대해 값싼 보험료로 보험보장의 기회를 확대 한다는 『간이보험』 본래의 취지와는乖離되어 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4) 遞信保險料率 算定 體系

체신보험의 요율산정 체계를 보면 ① 豫定利率은 사업개시 초기인 84년에는 10% 수준을 사용했으나, 그후 수차례에 걸친 상품개정시 8~7.5%를 사용하고 있으며, 체신연금과 상륙보험에서는 정기예금이율에 1.5%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② 豫定死亡率은 초창기에는 민영보험 사망율의 85%로 하였으나 현재는 민영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③ 豫定事業費중 신계약, 수급비는 민영보험의 유사한 상품의 사업비 수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유지비는 민영보험보다 낮게 책정

하여 低料化를 꾀함으로써 민영보험과 가격경쟁에서 유리하도록 했다.

3. 農業協同組合 共濟

(1) 農協共濟 沿革

우리나라에서의 農協共濟事業은 1915년 일제의 지방 금융조합의 화재공제와 1919년 경북 축산협동조합의 가축공제로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農協共濟事業은 농업은행과 구농협을 통합하여 종합농협이 발족된 1961년 8월 15일 이후라고 할 수 있다.

1961년 7월 농협법제정 당시 실존하지도 않는 조선 보험업령을 배제한다는 규정에 대해 業界와 財務部·法務部내에서 논란이 많아, 재무부에서 법무부에 “非組合員에 대한 農協의 共濟事業” 적법 여부를 질의한 결과 법무부에서는 실제 있지도 않은 조선 보험업령이 보험업법(농협법보다 5개월 후 제정)의 代置法이라는 취지로 적법하다는 유권 해석을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보험업법 적용이 배제된 농협법에 의한 生命共濟事業 개시 움직임이 있자 정부의 保險政策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民營保險育成을 저해함으로 재무부에서 농림수산부장관에 실시 유보를 요청 하였으며, 생명보험협회에서는 각계에 진정하는 등 반발을 보였으나, 1965년 8월부터 생활 안정공제, 어린이 희망공제 2가지 상품으로 生命共濟事業을 개시하게 되었다.

생명공제사업 개시 초년도인 1965년부터 1971년까지 농협의 신계약이 민영보험사 평균신계약을 상회하는 호조를 보였으나, 71년부터 민영보험이 점포망 확충등 영업조직을 보완 확대하면서 급신

상 품 명	상품특징	가입한도	보험기간	판매개시일	기 타	산 출 기 초 율			1991년 판매 실적 (단위: 억원)			
						i	q	e	신계약	%	수입보험료	%
교 육	체신장학보험	유아~대학의 입학금 학자금 마련 보험	100~3,000만원	22세 만기	'92. 1월	○ 태아 가입가능	7.5%	2회 경험 (남·여)	α : 30/00 β : 4% γ : 3%	-	-	-
	학자금보험	중학~대학의 입학금 학자금 마련 보험	500~3,000만원	21세 만기	'87. 11월		7.5%	'85 간이 (남)	α : 20/00 β : 3/00 γ : 3%	286	1.7	59 0.6
연 금	체신연금보험	민보의 노후 복지연금 보험과 유사	초년도연금액 50~600만원	중신(연금개시, 45세 이상, 자유선택)	'91. 4월	○ 중도해지이율 불적용	정 기 예 금 +1.5%	1회 경험 (남·여)	α : 180% β : 3,500원 γ : 2%	160	1.0	41 0.5
단 기 저 축	복 지 보 험	중도탈퇴급부금형의 단기 저축상품	10~3,000만원	3년, 5년	'86. 2월	○ 탈퇴율 사용 ○ 군단별 요율적용	10%	'85 간이 (남)	α : 3, 7% $\beta+\gamma$: 3%	11,930	69.6	7,320 76.5
	가계안정보험	생일축하금 및 중도탈퇴급부금형의 단기 저축상품	10~3,000만원	3년, 5년	'84. 4월	○ 탈퇴율 사용 ○ 군단별 요율적용 ○ 피보험자·직계존비속의 결혼·회갑·사망시 만기보험금의 일부 선지급	10%	2회 조정 의 85% (남)	α : 4, 6% β : 1, 2% γ : 2%	3,285	19.2	1,928 20.2
보 장	정 기 보 험	재해 2배보장의 순수 보장성상품	100~1,500만원	3, 5, 10년	'83. 7월	○ 3세 Set back	8%	2회 조정 (남)	α : 40.60% β : 15% γ : 4%	39	0.2	1 0.0
	다 보 장 보 험	재해 고보장의 만기환급형 보장성상품	100~400만원	10, 20년 65세	'91. 4월	○ 5배형, 10배형, 20배형	7.5%	1회 경험 (남·여)	α : 30/00 β : 2/00+4% γ : 3%	188	1.1	6 0.0
	체신건강보험	성인병 입원, 수술보장의 만기환급형 보장성 상품	100~3,000만원	5년, 10년	'92. 1월		7.5%	2회 경험 (남·여)	α : 15.30/00 β : 2/00 γ : 3%	-	-	-
양 로	상 록 보 험	고이율의 중·장기 양로보험	100~3,000만원	5, 15, 20년	'92. 1월	○ 중도해지이율 불적용	정 기 예 금 +1.5%	2회 경험 (남·여)	α : 30/00 β : 4/00 γ : 3%	-	-	-
단 체	직 장 보 험	퇴직 담보 단체 양로보험	10~3,000만원	5, 10년	'84. 4월	○ 민보 퇴직율의 90~100% 사용	10%	2회 조정 의 85% (남35세)	α : 5, 10% $\beta+\gamma$: 4, 7%	1,221	7.1	193 2.0

자료: 체신보험상품 개선 및 신상품개발('92.12) 체신개발연구원. p. 48~101

장 하였고, 농협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표-7〉 농협공제연혁

- 1961	: 농협협동조합법 제정(농업은행 및 기존의 손해공제 사업 승계)
- 1965	: 생명공제 실시(시군조합: 원수공제, 중앙회: 재공제 체제로 전환)
- 1967	: 계약자 배당 실시
- 1969	: 국제 협동조합보험 연합 (I.C.I.F) 가입
- 1970	: 단위조합(164개) 공제업무 대리취급
- 1973	: 공제업무 취급 단위조합 1,360개 확대
- 1975	: 공제 복지사업 실시(공제 장학금 지급, 공제 수련소 개설)
- 1977	: 체신부 국민생명보험 인수(119만건, 보유계약 925억)
- 1977	: 단위조합 공제업무 대리취급→원수공제 취급
- 1980	: 마을 단위 부녀회장을 공제보급 요원(36,100여명) 위촉
- 1982	: 순보식 준비금 적립
- 1991	: 공제 보급원제도 도입

(2) 農業協同組合法 및 共濟事業의 規制 監督 농협협동조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보험업법 적용 배제(법 제13조)
- ② 準組合員: 조합의 구역내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자(법 제22조의 2).
- ③ 共濟規定(사업방법, 공제계약, 공제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등)은 농수산부 장관의 인가사항(법 제58조의 2).
- ④ 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비조합원의 공제사업 이용가능(법 제

59조).

- ⑤ 예·적금 및 대출에 관한 최고 이자율한도는 재무부장관과 협의 결정(시행령 제5조).

농협협동조합법은 組合員의 相互救濟라는 공제사업의 근본 취지를 이탈하여 準組合員·非會員에 대해서도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 또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라는 애매모호한 조항으로 사실상 전국민을 대상으로하는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보험업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물론 같은 중앙행정부처인 농수산부의 규제·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으나, 預·積金 利率限度는 재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같은 금융기능을 가진 共濟의 豫定利率은 이러한 협의제도가 없어 실제로 농협 공제의 豫定利率體系가 민영보험보다 2.5%~4.5% 높게 책정되어 있어 보험(공제)정책 결정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민영보험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共濟事業의 對象, 共濟料 算出基礎率, 공제가입한도등 민영보험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 장관과 협의 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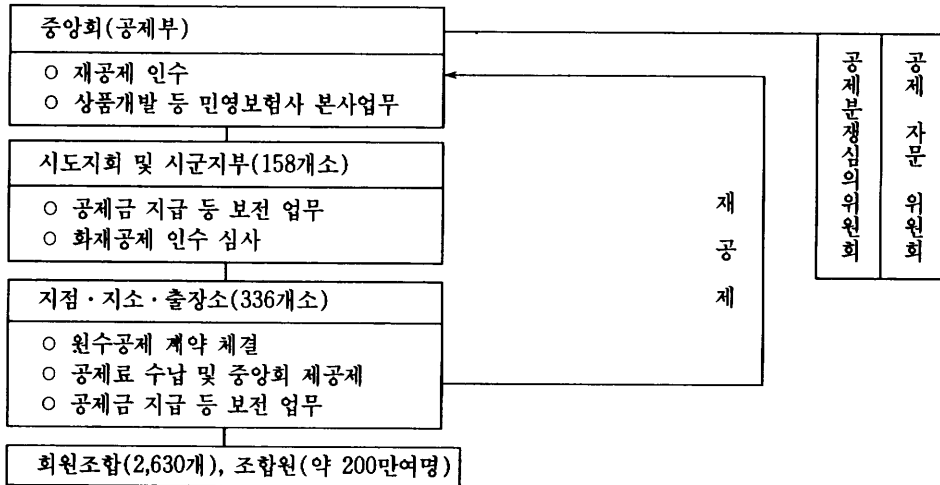
(3) 農協共濟의 販賣組織 및 販賣商品

① 판매조직

農協共濟의 販賣組織을 보면 농협중앙회 산하에 158개소의 시도지회및 시군지부가 있고, 336개소의 지점 및 출장소가 있으며, 여기에서 공제업무를 취급한다. 그리고, 原受共濟募集은 2,630개의 단위조합·특수조합의 본소·지소에 1,425명의 시

(그림-2)

농협조직 및 공제



범공제 보급원을 비롯하여 도시지역의 농협부설 주부대학사원(약8만여명) 마을 단위 부녀회장을 共濟 普及要員(약4만여명)으로 위촉하여 組合員(약200여만명), 準組合員 및 非會員을 대상으로 모집활동을 하고 있다.

② 판매상품

農協共濟는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2년 현재 생존상품 3종, 단기저축상품 3종, 보장성 상품 7종 및 단체상품 1종 총 14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상품판매 성향을 보면 收入共濟料는 저축성상품이 79%를 점하고있어 民營保險과 같이 저축성상품 판매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고, 신계약액은 농작업상해, 재해보장이 70%를 점하고 있어 재해 사고보장의 계약액이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農協共濟도 民營保險의 주종상품인 노후복지·새가정복지와 유사한 貸出利率·定期預金利率 連動商品을 판매하고 있으며, 자유 입·출금식 저축상품, 예금과 연계한상품, 현물보상 상품, 재해상

해를 주보험으로 한 상품등 민영보험에 없는 특수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판매실적은 미미하다.

(4) 農協共濟料 算定體系

農協共濟의 요율산정 체계를 보면 ① 豫定利率은 10~12%로 민영보험보다 2.5~4.5% 높은 수준이며, 정기예금이율에 연동된 저축상품이 '93. 1. 26 및 3. 26금리인하로 11.5~12%에서 10~10.2%로 인하되어 보장성상품보다 오히려 낮은 금리체계의 모순을 보이고 있다. ② 豫定死亡率은 '88년이전 개발상품은 민영보험사의 제2회조정 국민생명표, '89년이후 개발상품은 제1회 및 제2회 경험생명표(남·여) 死亡率을 적용하고 있어 사망을 체계가 다원화 되어 있는 것이 민영보험과 다른점이다. ③ 豫定事業費率は 사업비 비목 구분이 없거나 판매비, 관리비로 단순화 되어 있으며, 사업비를 수준은 민영보험의 70~80%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다.

요율산정 체계를 전체적으로 보면 利率·事業費

〈표-8〉

農協共濟 販賣商品 現況

상 품 명		상품특징	가입한도	보험기간	판 매 개시일	기 타	산 출 기 초 율				1991년 판매 실적 (단위: 억원)			
							i	q	α	β	신계약	%	수입보험료	%
교 육	학 사 공 제	대학 입학금·학자금 지 급의 교육보험	100~3,000 만원	22세 만기	'86. 2월		10.0%	2회 조정 (남·여)	20%		789	1.2	9	0.1
	진 학 공 제	고교·대학 입학금, 학자 금, 졸업축하금 지급의 교육보험	10~3,000 만원	22세 만기	'77. 1월	○ 태아 가입 가능	10.0%	2회 조정 (남·여)	25/00	5/00	300	0.4	121	1.5
연 금	노후연금보험	민영보험의 『노후복지연 금』과 유사	월 보험료 2~ 30만원, 일시납 보험료 200만 원~1억원	중신(연금개 시연령 40~ 70세 선택)	'87. 9월	○ 중도해지이율 불적 용	정 기 예 금 +1.5%	2회 조정	적립형: 5% + 1,000 원 거치형: 4%		1,543	2.3	143	1.8
단 기 저 축	저축보장공제	재해 고보장(최고 3배) 의 단기저축상품	10~3,000 만원	3년, 5년	'85. 7월	○ '87. 9 탈퇴율 폐지	11.0%	2회 조정 (남·여)	12/00, 13.5/00		10,636	15.7	5,168	64.8
	자유적립공제	정기예금이율 연동의 자 유 입·출금식 장·단기 저축성 상품	보장계약: 100 ~3,000만원 적립계약: 보장 계약의 3배이내	3, 5, 7, 10년	'89. 1월	○ 비환연자 할인 ○ 보장·적립계약분리 및 적립계약자유입·출금 ○ 연납, 일시납	정 기 예 금 ×1.2배	1회 경험 (남·여)	일시납: 8/00 연 납: 35/00+5%		609	0.9	884	11.1
	무공화저축공제	일시납의 단기저축 상품	5~300만원	3년, 5년	'82. 10월	○ 재해사망 30배 보장	11.0%	2회 조정 (남·여)	45/00	초년: 5/00 차년: 3/00	294	0.4	250	3.1
보 장	농작업상해공제	농민의 농기계 사고, 농 약중독사고의 순수 보장 성 상품	100~1억원	1년, 3년	'89. 1월	○ 본인계약, 부부계약 ○ 본인부담 입원·통원비 실손보상(10만원초 과)	8.0%	1회 경험 (남·여)	1년: 0.18/00 +1,000원 3년: 0.35/00 +2,160원		27,358	40.5	45	0.6
	효도건강공제	가입자 부모 무료건강 진단의 보장성 상품	500~3,000 만원	3년, 5년	'91. 3월	○ 5종 검사(30종 질환)	12.0%	민 보 재 해 사망·상해율	1.6, 2.3/00	0.4 1.0/00	1,315	1.9	20	0.3
	재해보장공제	재해사망·상해의 순수보 장성 상품	100~1억원	3년, 5년	'85. 1월	○ 일시납 판매	10.0%	2회 조정	— 30%		—		76	1.0
	환율타리공제	피공제자 사망보장의예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 사망시 장의용품을 현금 보상하는 만기환급형 보 장성 상품	500~2,000 만원	5년, 7년	'92. 1월		12.0%					—		—
	새 생 활 공 제	재해 고보장(최고 30배) 의 만기 환급형 상품	10~3,000 만원	7년, 10년	'78. 1월	○ 연납 판매 ○ 재해 2, 6, 30배형	10.0%	2회 조정 (남·여)	25, 45/00	5, 13/00	4,249	6.3	1,185	14.8
	한 사 랑 압 공 제	암진단·입원·수술의 보 장성 상품	500~2,000 만원	5년, 10년	'92. 1월		10.0%	2회 경험 (남·여)	8.4/00+5, 10%		—		—	
	이자로보장공제	예금의 이자로 재해사 망, 2-3급 장애보장	월보험료 200~10,000 만원	1개월, 3개월	'89. 5월	○ 재해사망시 보험료의 9,000배 보장	—	민 보 재 해 사망·상해율	30%		—		3	0.0
단 체	단체저축공제	퇴직담보의 중기 저축상 품	10~3,000 만원	10년	1회 경험 퇴직율	○ 계약금액 범위내 기업 의 단기 운전자금운용	10.0%	2회 조정 (남·여)	15%	8%	290	0.4	47	0.6

자료: 공제사업통계('92) 농협중앙회 p. 222~232

率면에서는 民保社보다 낮은 가격, 死亡率면에서는 다소 높은 가격결정 구조로 되어 있어 民保社보다 요율경쟁에서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

4. 水産業協同組合 共濟

(1) 水協共濟 沿革

우리나라에서의 水協共濟事業은 1937년 일제시대에 漁船共濟事業을 개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이 발족되고 1970년에 후생공제, 자녀공제 2가지 상품으로 生命共濟事業을 개시하였다.

수협이 공제사업은 1990년 기준 收入共濟料가 농협의 20%에 불과하며, 어선공제등 손해공제료가 전체 공제료의 56%를 차지하여 생명공제사업은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한편 수협에서는 어선공제를 대한재보험(주)에 재보험으로 부보하려고 하였으나, 대한재보험(주)

에서 수협공제가 보험업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漁船共濟의 재보험 인수를 거부하여 수협으로서는 危險引受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 水産業協同組合法 및 共濟事業의 規制監督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수산청장 감독, 信用事業은 재무부장관과 사전협의(법 제10조)
- ② 보험업법 적용 배제(법 제14조의 2), 信用事業은 銀行法 및 韓國銀行法 적용(법 제14조)
- ③ 準組合員(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자)도 사업이용가능(법 제26조의 2)
- ④ 수산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共濟規約으로 제정(법 제65조)

수산업협동조합법은 농협법을 토대로하여 제정되어 농협법과 유사하나, 共濟事業에 대해 수산청장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표-9〉 수협공제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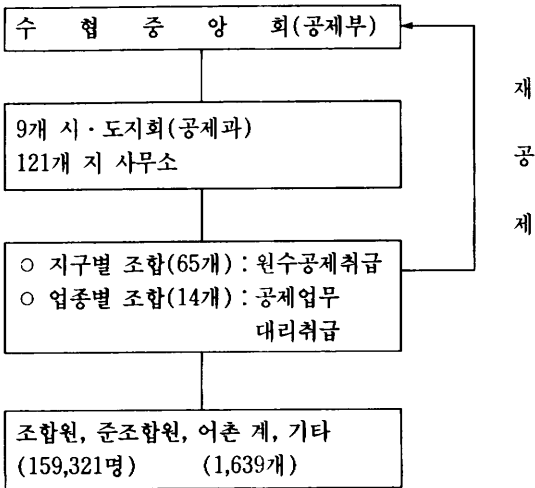
- 1937 : 조선수산회 어선공제사업 개시
- 1954 : 대한수산중앙회 어선공제사업 재개
- 1962 : 수산업협동조합 발족(대한수산중앙회 공제사업승계)
- 1970 : 생명공제 개시(후생공제, 자녀공제)
- 1977 : 생명공제사업 원수공제업무 지구별 수협에 이관
- 1981 : 준비금저립 방식 변경(순보식→질멜식)
- 1983 : 공제 모집인제도 운영(수협 “가정 설제사”로 호칭)
- 1987 : 공제료 유예기간 연장(최장 3개월→7개월)
- 1991 : 가입한도액 인상(2,000→3,000만원) 및 건강진단제 폐지

(3) 水協共濟의 販賣組織 및 販賣商品

① 판매조직

水協共濟의 販賣組織은 수협중앙회 산하에 9개 개 도지부에서 공제업무를 취급하며, 65개 지구별 조합에서 원수공제를 취급하고, 14개 업종별조합에서는 공제업무를 대리 취급하고 있으며, 여기에 공제장려원 56명, 공제요원 832명이 16만여명의 조합원 1,639개 어촌계의 계원 및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공제장려원·공제요원에게는 월 5만원의 기본수당과 모집계약액의 10/1,000에 해당하는 모집수당 및 기타 특별장려금이 지급된다.

〈그림-3〉 공제사업 운영조직



② 판매상품

1992년 현재 수협공제 판매상품은 〈표-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존상품 1종, 단기저축성상품 3종, 보장성상품 4종 및 양로상품 1종으로서 총 9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수협공제는 체신보험·농협·신협과 달리 금리연동형의 高金利商品을 현재는 판매하지 않고 있으나, 1993년중에 고금리의 연금상품 및 단체상품을 판매할 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다. 販賣性向은 신계약은 단기저축성상품 57.8%, 재해보장상품 32.4%로 전체 신계약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收入共濟料은 단기저축성이 74.3%로써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4) 水協共濟料 算定體系

수협의 공제로 산출 기초율을 보면 ①豫定利率은 단기상품의 경우 10~12% 기타 중·장기상품은 8~10%를 적용하고 있어 민영보험사보다 0.5~1.5% 높다 ②豫定死亡率은 체신·농협과 같이

상품개발 또는 개정 당시의 民保死亡率을 적용하여 제2회 조정국민생명표~제2회 경험생명표사망을 혼용하고 있다.

③ 豫定事業費率은 수금비 없이 신계약비·유지비로 단순화하여 신계약비는 民保수준 (단기 15/00, 장기 30/00)이나 유지비는 민보의 80% 정도를 적용하고 있다.

전체적인 공제요율 산정체계를 보면 체신·농협과 같이 高利率·低事業費로 민영보험보다 低料率化를 꾀하고 있다.

5. 信用協同組合 共濟

1960년 信用協同組合法이 제정되었고, 1974년에 신탁중앙회의 공제사업 승인을 얻어 1978년부터 生命共濟事業을 개시하였으며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되어있다.

信協共濟는 信協中央會 산하에 15개 연합회, 1,500개조합, 약 15만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장학공제, 노후생활연금공제, 무지개종합공제등 3가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신탁공제로 산출체계를 보면 민영보험의 노후복지와 유사한 노후생활연금공제가 정기에금이율 + 3.5%로 노후복지보험보다 1.5% 높은 수준이며, 중장기상품은 9~10.5%로 민영보험보다 1.5~3% 높다. 예정사업비율 또한 민영보험의 75% 수준을 적용하여 高利率·低事業費率의 요율체제로 되어 있다.

신탁공제는 계약선택 기능의 미비로 인한 역선택방지를 위하여 일반사망의 경우 3개월, 재해의 경우 30일간의 無保障期間을 두고 있으며, 정신장애 무면허운전 범죄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는 면책이 되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표-10〉

水協共濟 販賣商品 現況

상 품 명		상 품 특 징	가입한도	보험 기간	판 매 개시일	기 타	산 출 기 초 율			1991년 판매 실적 (단위:억원)			
							i	q	e	신계약	%	수입공제료	%
교육	장 학 공 제	중·고·대의 입학금 · 학자금지급상품	3,000만원	12세, 15세, 18세, 22세	'83. 9	○ '83. 3이전 i=15%	10%	2회 조정 (남)	α : 25/00 β : 5/00	20	2.3	6	3.2
단 기 저 축	생 활 복 지 공 제	단기저축성상품 (3배보장)	3,000만원	3년, 5년	'84. 7	○ 사망보장체증 : 1~3S	10%	2회 조정 (남)	α : 15/00 β : 3.6~6.4%	3	0.3	3	1.6
	복 지 저 축 공 제	단기저축성상품	3,000만원	3년, 5년	'89. 2	○ 재해 2배 보장	11%	1회 경험 (남·여)	α : 15/00 β : 2.4~4.8%	481	55.7	131	74.3
	돌 고 래 저 축	단기저축성상품	3,000만원	3년, 5년	'92. 8	○ 2년미만 일반사망 35~70% 지급	12%	2회 경험 (남·여)	α : 15/00 β : 2.4~4.8%	—	—	—	—
보 장	무 지 개 공 제	재해 2배의 만기환 급형 보장상품	3,000만원	3, 5, 7, 10 년	'85. 1		10%	2회 조정 (남)	α : 15/00 β : 9/00	16	1.8	2	1.3
	치 료 공 제	입원·수술비의 순 수보장성상품	300만원	3년	'86. 1	○ 배우자 22세미혼 자녀를 종피공제 자로 함. ○ 연납 판매	10%	2회 조정	15%	2	0.3	0.2	0.01
	재 해 보 장 공 제	재해 사망·상해의 순수보장성상품	3,000만원	3년	'87. 8	○ 선원 가입불가 ○ 일시납 판매	10%	2회 조정	30%	280	32.4	1	0.4
	돌고래보장공제	교통재해 및 일반 재해 사망·상해의 만기환급형 보장성	3,000만원	3, 5년	'91. 7	○ 연납기준기 납입 액 환급	10%	2회 조정 (남·여)	α : 15/00 β : 7~12%	55	6.3	1	0.6
양 로	복 지 양 로 공 제	중기저축상품	3,000만원	7년, 10년	'82. 6	○ '83. 3이전 i=14%	8%	2회 조정 (남)	α : 30/00 β : 8~11.8%	7	0.8	4	2.1

자료 : 공제사업 업무통계('92) 수협중앙회 p. 163~169

〈표-11〉

信協共濟 販賣商品 現況

상 품 명	상 품 특 징	가입 한도	보험기간	판 매 개시일	산 출 기 초 율			1991년 실적(억원)	
					i	q	e	신계약	수입공제료
장학공제	중·고·대·종합 의 교육상품	2,000만원	6세, 12세, 15 세, 18세, 22 세, 25세 만기	'78. 2	10.5%	2회 조정 (남)	$\alpha: 25/00$ $\gamma: 1.3\%$	300	15
노후생활 연금공제	민보의 노후복 지와 유사상품	공제료 기준 적립형: 20만원 거치형: 1억원	종 신	'92. 4	정기 예금 +3.5%	2회 경험	(적립형) $\alpha: P^1 \times 150\%$ $\beta: 3,600\text{원}$ $\gamma: 2\%$	—	—
무 지 개 종합공제	재해 고보장, 재 해입원 압진단 급부의 보장성 상품(연령 군단 별 요율적용)	3구좌 재해보장 5,400만원	7년	'93. 2	9.0%	2회 경험	$\alpha: P^1 \times 150\%$ $\beta: 0.7 \sim 3\%$ $\gamma: 3 \sim 5\%$	—	—

6. 새마을금고 共濟

1989년 12월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된 후 1991년 3월 損害共濟事業을 1992년 9월에는 한가족공제 상품으로 생명공제사업을 개시하였다. 새마을금고는 내무부장관의 규제 감독을 받으며, 保險業法 적용을 배제하고, 공제규정은 내무부장관의 인가 사항이나 販賣限度額과 豫定利率은 재무부와 사전 협의의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새마을금고공제는 새마을금고 연합회 산하의 3,200여개 금고를 통하여 약 700만명의 정회원·준회원을 대상으로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공제사업을 개시한지가 얼마되지 않아 업적등은 과약되지 않고 있으나 共濟料率, 配當率, 加入限度額등을 연합회 회장이 결정토록되어 있어 전문성 결여, 他 共濟나 民保와 과당경쟁소지등의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가입대상 또한 준회원으로 확대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은 농·수·신탁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III. 類似保險의 領域 擴大

1. 類似保險의 實績 現況(FY'91기준)

(1) 총자산

逓信·農協의 總資產은 각각 17,070억, 19,489 억원으로 동아생명 자산을 상회하고 있으며, 수협은 791억원으로 태양생명(구 충북생명) 자산 규모이다.

최근 5년간 逓信保險의 總資產 增加率은 43.1%로써 民營保險의 32.8%를 능가하여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2) 수입보험료
 逓信・農協의 收入保險共濟料는 각각 9,567억,
 7,980억원으로 동아생명의 94~79% 정도수준이
 며, 水協은 177억으로 영풍M 收保料의 1.6배정도

의 규모이다. 최근 5년간 逓信保險의 收入保險料
 增加率이 36.1%로서 民保社 증가율 28.5%를 7.6
 % 앞서고 있다.

〈표-12〉 類似保險의 資産 및 收入保險料

(단위: 억원, %)

년도	자 산								수 입 보 험 료							
	체 신		농 협		수 협		민 영		체 신		농 협		수 협		민 영	
'87	4,872	67.4	8,024	33.5	491	4.0	122,479	34.1	3,527	66.6	3,253	41.1	115	9.5	72,933	31.3
'88	7,317	50.2	11,043	37.6	533	8.6	170,670	39.3	4,800	36.1	4,314	33.9	113	1.7	93,791	28.6
'89	10,040	37.2	13,568	22.9	640	20.1	226,435	32.7	6,117	27.4	5,241	20.3	116	2.7	118,656	26.5
'90	12,989	29.4	16,282	20.0	669	4.4	310,070	32.7	7,803	27.6	6,386	21.8	131	12.9	160,531	35.3
'91	17,070	31.4	19,489	19.7	791	18.2	388,261	25.2	9,567	22.6	7,980	25.0	177	35.1	193,771	20.7

(3) 신계약 및 보유계약
 逓信保險의 최근 5년간 新契約・保有契約 增加
 率은 민영보험의 27.1%, 33.7%를 약간 밑도는

24.1% 31.9%를 보이고 있으며, 農協은 41.7%,
 40.6%로써 민영보험보다 각각 14.6% 및 6.9%를
 초과 성장하고 있다.

〈표-13〉 類似保險의 新契約 및 保有契約

(단위: 억원, %)

년도	신 계 약								보 유 계 약							
	체신	증가율	농협	증가율	수협	증가율	민영	증가율	체신	증가율	농협	증가율	수협	증가율	민영	증가율
'87	9,368	54.8	17,364	45.2	956	19.2	981,158	0.2	15,668	59.5	35,063	56.6	956		1,352,848	18.9
'88	10,370	10.7	23,079	32.9	1,054	10.3	1,274,347	29.9	20,377	30.1	49,898	42.3	1,054	10.3	1,830,317	35.3
'89	12,652	22.0	33,838	46.6	1,349	28.0	1,882,075	48.3	25,804	26.6	70,478	41.2	1,349	28.0	2,699,893	47.5
'90	15,186	20.0	52,574	55.4	1,480	9.7	2,391,653	27.1	31,659	22.7	97,870	38.9	1,480	9.7	3,617,241	34.0
'91	17,152	12.9	67,572	28.5	1,972	33.2	3,106,751	29.9	38,168	20.6	121,243	23.9	1,972	33.2	4,800,700	32.7

2. 加入對象 擴大

逕信保險은 체신보험법상 加入對象에 전혀 제한이 없으며, 각종 共濟 또한 특별법상 準組會員 또는 非會員에까지 가입이 허용되어 있어 사실상 불특정다수의 전국민을 대상으로하는 보험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1983년(체신보험 재개년도) 대비 1991년의 신계약 가입건수는 농협 3.6배, 체신 3.0배로서 民保 1.7배보다 높아 농협과 체신이 가입대상을 확대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3. 加入限度額 高額化

逕信保險의 加入限度額은 '83년 7월의 1,000만원에서 5년후인 '88년에 2,000만원으로, '93년부터 3,00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農協 및 水協은 '91년에 일반사망 3,000만원, 재해사망 1억원까지 가입한도액을 확대하였다. 信協은 일반사망 2,000만원, 재해사망 4,500만원을 한도로 계약을 인수하고 있다.

체신보험은 재무부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가입한

도를 인상할 수 있지만, 농협 등의 공제는 自體 共濟規定의 改正만으로 가입한도를 인상할 수 있으므로 매3~5년을 주기로 아무런 제약없이 가입한도액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4. 民營保險商品 模倣

(1) 노후설계연금보험 모방

農協은 民營保險의 노후설계연금보험을 모방하여 加入年齡範圍, 加入限度額을 확대하고, 사업비를 노후설계의 70% 수준으로한 정기예금+1.5%의 노후연금공제를 노후설계 판매개시 6개월만에 판매하였다.

체신보험 또한 가입한도액을 총납입보험료 기준 1억원으로 하고, 사업비를 노후설계보다 10% 낮게 책정한 노후설계 연금보험의 보험종류를 신설하려 하였으나, 재무부 당국과 2차례에 걸친 협의과정에서 거부되자 기존의 체신연금보험상품의 개정이라는 편법으로 '91년 4월부터 판매개시 하였다.

유사상품의 5년 수익율을 보면 노후설계보다 농협이 3.1%, 체신보험이 0.1%, 신협이 7.7% 높게

〈표-14〉 老後設計 類似商品 比較 (적립형 월보험료 20만원 기준)

구 분	민보(노후설계연금)	농협(노후연금)	체신(체신연금)	신협(노후생활연금)
판 매 일 자	'87. 3	'87. 9	'91. 4	'92. 4
준 비 금 부 리 율	정기예금+1.5%	정기예금+1.5%	정기예금+1.5%	정기예금+3.5%
총 사 업 비 율 (對 老設)	보험료의 7.8%	보험료의 5.5% (△2.3%)	보험료의 7.35% (△0.45%)	보험료의 6.8% (△1.0%)
일 반 사 항	300만원+V	300만원+V	100만원+V	400만원+V
재 해 사 망	500만원+V	1,000만원+V	100만원+V	1,000만원+V
5 년 수 익 율	123.2% (119.9%)	126.3% (121.6%)	123.8% (119.3%)	130.9% (123.6%)

(주) ① 정기예금이율 10% 기준

② ()내는 정기예금이율 8.5% 기준 및 노후복지의 수익율

되어 있다.

신보험은 豫定脫退率이 실제보다 현저히 높아 준
비금적립부담 및 탈퇴손이 커지게 되자 탈퇴율을
개정하여 '93년 현재까지도 판매중에 있으며, 농
협은 '87년 9월에 탈퇴율을 삭제하였다. 보험료를
비교하면 희망복지보다 체신보험이 6.4%, 농협의
2.2% 저렴한 수준이다.

(2) 희망복지보험 모방

遞信保險과 農協에서 희망복지와 같이 脫退殘存
率을 적용한 복지보험 및 저축보장공제를 각각
'83년 1월, '85년 7월에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체

<표-15>

希望福祉 類似商品 比較

(5년만기, 1,000만원, 월납기준)

구 분	민보(희망복지)			체신(복지보험)		민보(희망복지)
판 매 일 자	'82. 7('87.5이율 인하)			'86. 2('88.6탈퇴율 개정)		'85. 7('87.9이율인하, 탈퇴율 삭제)
예 정 이 율	7.5%			10.0%		11.0%
예 정 사업비율	α	β	γ	α	$\beta+\gamma$	사 업 비 율
	15/00	2%	2%	7%(약 11.2/00)	3%	12/00
예 정 탈 퇴 율	22.1~10.14%			5%(종전 : 22.1~10, 14%)		탈퇴율불적용(종전 12~4%)
보험료예시(남자) 對 희복	35세 : 143,100원			40세 : 134,000원 (△9,100원)		40세 : 140,000원 (△3,100원)
일 반 사 망 제 해 사 망	200~2,000만원 2,000만원			200~2,000만원 2,000만원		100~2,000만원 2,000만원

(3) 기 타

民營保險社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중 소비자의
호응도가 좋은 상품은 판매개시 2~3년후 類似한
擔保形態의 상품을 개발하여 高利率·低事業費率
로 價格競爭을 하고 있다.

그리고 民保에서 개발한 태아가입특약, 비흡연
자 할인특약등도 즉시 도입되고 있으며, 民保의
經驗死亡率과 特定疾病의 發病·入院·手術·死亡
率을 遞信保險이나 共濟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과과정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표-16>

民營保險과의 類似商品·制度 模倣 現況

구 분	민 영 보 험	체 신 보 험	농 협 공 제	신 협 공 제
교 육 보 험	태아가입특약	태아가입특약	—	—
건 강 보 험	새생활암, 성인건강	체신건강	한사랑암	—
보 장 성 보 험	무지개	다보장	새생활공제	무지개종합공제

5. 專門募集人制度 導入

채신보험은 1984년에 보험모집인제도를 도입하여 약 400여명의 전속 모집조직을 구축하고 있으며, 집배원을 여성화하여 민영보험의 데비트시스템과 유사한 판매조직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 채신보험 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여 민영보험과 같은 규모의 영업활동을 전개하고자 준비중에 있다.

농협은 1991년에 공제보급원 조직을 도입하여 약 1,400여명이 활동중이며, 농촌지역의 마을부녀회 조직 4만여명, 도시지역의 농협부설 주부대학 조직 8만여명을 모집활동에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수협 또한 1983년에 도입한 공제장려요원 및 공제요원 900여명을 조직하여 모집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표-17〉

類似保險의 機關數 및 募集組織

구 분	기 관 수	모 집 종 사 자 수
채 신	3,344개소	12,000여명(집배원, 우편취급소장, 전문모집인)
농 협	3,167개소	121,400여명(공제보급원, 농촌부녀회장, 주부대학)
수 협	200개소	900여명(공제요원, 공제장려원)
신 협	1,515개소	200여명(공제담당직원, 공제추진요원)

IV. 對應方案

1. 法的·制度的 對應

(1) 법적 대응

① 보험업법에 보험사업 정의 규정화

유사보험사업은 조합보험 및 간이보험의 취지를 이탈하여 불특정다수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가입금액 또한 고액화 되어가고 있으므로 가입자 보호와 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민영보험에 준하는 감독을 받도록 보험업법에 보험사업의 정의를 명문화하여야 한다.

② 공제사업의 특별법상 보험업법 적용 배제조항 삭제

민영보험과의 경합을 떠나 공제사업도 예·적금

등의 신용사업과 같은 금융사업이므로 신용사업과의 형평성 유지, 보험가격 결정의 전문성, 지불능력 감증을 위해서도 보험업법 적용 배제조항을 삭제하고 보험업법 제208조(공제사업의 기초서류에 대한 재무부장관 협의 요구권)을 활용하여야 한다.

(2) 제도적 대응

① 민영보험과 유사보험 감독기관간 위원회 설치

유사보험 및 조합보험이 民營保險의 補充이나 相互救濟라는 원래의 설립취지를 이탈하여 민영보험과 동등한 수준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민영보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자율성을 향유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나므로 각 감독기관간에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加入限度額, 加入者範圍, 保險料 算出 基礎率等 중요사항은 협상

을 통하여 설립목적에 맞는 領域限界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가입한도액의 인상의 제도적 장치마련

가입한도액 인상이 일본에서도 민보와 유사보험 간에 첨예한 쟁점이 되어 왔으며, 이에 대응하여 消費者物價指數가 일정율(15%)이상 상승시 가입한도액을 인상하도록 합의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技術的·專門的 引上基準을 마련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2. 商品競爭力 提高

(1) 가격경쟁력 확보

유사보험과 민영보험의 가격은 類似保險이 高利率·低事業費로 低保險料化하여 항상 價格競爭이 잇따르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초기경쟁에서 최대 이슈로 대두되었다.

민영보험 가격 결정구조가 豫定利率은 감독기관의 통제로 2.5~4.5% 낮은 수준이며, 豫定事業費率도 유사보험이 민영보험의 70~80%를 적용하여 유사보험이 항상 價格優位에 있다.

앞에서 언급한바 대로 유사보험의 예정이율은 재무부장관과 사전 협의 결정토록하여 상호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민영보험은 경비절감 및 자산운용의 효율화등을 통해 계약자 배당을 충실화하여 실질적인 低料率化를 도모함으로써 價格競爭優位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상품의 차별화 및 특화 상품개발 강화

유사보험기관의 계약선택기능 미비, 전산기술 개발의 낙후 및 전국온라인망 미구축등으로 유사보험에서 모방할수 없는 치명적 질병의 生前給付 保險, 노인개호보험, 다양한 醫療保障保險 및 所得報償保險등을 先進形 保險商品의 開發로 상품의 差別化·特化를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資產運營 技法面에서의 우월성을 활용하여 변액보험·유니버설보험등 高收益의 先進形商品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유사보험의 저축상품시장 잠식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종 특약을 가입자가 자유선택·부가토록 하여 商品選擇의 便宜性을 도모하여야 하겠다.

3. 契約者 서비스強化

유사보험기관에서 법적·제도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한 대리점의 확충 및 D.M판매, 점두판매등을 통하여 販賣窓口를 多樣化하여야 한다.

유사보험이 政府機關의 公定力, 組合의 共同利益 및 事業의 非營利性을 앞세우고, 민영보험사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서민층을 공략하고 있으므로 弘報活動을 강화하고 公益事業을 擴大하고, 도시서민 및 농어민의 계절적 자금수요에 부응한 營農·營漁資金, 學資金등의 대출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일반대중에 대한 민영보험의 서비스를 제고하여야 한다.